

# 울산북구 구민 생활안전 보험



## + 구민 생활안전 보험이란?

북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 + 보험내용

보장기간(1년)

2023. 1. 1. ~ 2023. 12. 31.

- 적용대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북구 구민 모두 자동가입
- 적용제한: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 + 보장내용 및 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태 상해사망	 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만원
청소년 유괴·납치·불법감금	구민(만 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구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 된 경우	1,500만원
성폭력 상해보상금	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응급실 도착 전 사망한 환자도 보상)	5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구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500만원
물놀이 사망	구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타보험을 가입하였어도 중복지원 가능

## + 구민 생활안전보험 청구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 발생 3년 이내)

보험금 청구서류 - 필수서류: 보험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 기타서류: 상담창구에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울산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 T.1577-5939 F. 02-3148-9955  
 북구청 안전총괄과 Tel. 052-241-7891~6 Fax. 052-241-7899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청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 **공제사업** → **시민안전**

# Q & A



##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대상



### 자연 피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폭발, 화재, 붕괴사고란?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 보상제외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대중교통이란?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 전철, 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 + 시외 +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 +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가스상해사고란?

1. 가스의 누출사고
2.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3.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 강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자  
※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름



### 의사상자란?

[의사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의상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 스쿨존 교통사고란?

1.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